

의안번호	2210472
의 퇴 인	최민희의원
회 답 일	2025.8.1.
추 계 번호	25D279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공소제기 및 유지 대상 범죄를 모든 고위공직자의 범죄로 확대 규정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공소제기 및 유지 대상을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대(안 제3조)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전체의 범죄를 공소제기 및 유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공소제기 및 유지 건수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공소제기 및 유지 건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력 증원 및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2025년 기준 수사처 예산은 다음과 같으며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된 사업비는 공판활동 사업에서 지출되고 있음

[표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내역: 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정보화	합계
		수사지원	공판활동	소계		
8,659	4,506	1,430	30	1,460	10,643	25,268

자료: 수사처의 제출자료와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